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9. 2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8년 9월 22일 제59회(임시회) 제7차 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이종현)

가. 제안이유

- 교통불편민원사항은 승객인 시민이 체험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시민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심의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당사자인 시민(단체)을 적극 참여시켜 대중교통의 시민서비스 향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심의위원 중 공무원 4명을 2명으로 축소
- 심의위원 중 교통관련(업체, 조합, 지부) 위촉직 4명을 2명으로 축소
-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시견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대표 2명에서 6명으로 보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택시 등에 대한 위법사항·운전자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또는 운행상의 불합리성 등의 시민신고에 대한 민원을 공정하고 엄격한 처리를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을 처리하는 심의위원이 10명 이내로 구성도록 되어 있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은 공무원 4명과 교통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이는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시민으로서 교통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민은 참여를 하지 못하므로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공무원과 업체 임직원이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

기 위하여 업체의 임직원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으로 위원회를 위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1998. 8. 1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교통 불편민원사항은 승객인 시민이 체험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시민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심의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당사자인 시민(단체)을 적극 참여시켜 대중교통의 시민서비스 향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심의위원 중 공무원 4명을 2명으로 축소
- 심의위원 중 교통관련(업체, 조합, 지부) 위촉직 4명을 2명으로 축소
- 교통에 관한 전문적 의견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2명에서 6명으로 보강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단속 91123-5049('98.04.29)호
(택시 운행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시달)
- 예산조치사항 : 심의수당 - $50,000 \times 8명 \times 12개월 = 4,800,000$
-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반영

파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버스운수사업체(조합), 택시운송사업체(조합, 지부)의 임·직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각 1명
2.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시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시민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6명. 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수지도계장 2. 교통지도계장 3.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화물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영동지부의 임직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각 1명 4. 구청장이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시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2명 	제3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버스운송사업체(조합), 택시운송사업체(조합·지부)의 임직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각 1명 4.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시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 시민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6명